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하고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: 7일		
신고인 (사업주)	상호 또는 법인 명칭			대표자 성명	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	(전화번호:)		
	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			사업자등록번호		
	가입범위	사업장별 [] 사업의 전부 []				
사업장	사업주 구분	원수급 [] 자체시공 []				
	사업장의 명칭					
	사업장의 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	총공사금액	원	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	원	건설호(실) 수	호(실)
	사업기간		착공일		주된 공사종류	
	발주자	구분	국가 [] 지방자치단체 [] 정부출자·출연기관 [] 정 부 재 출 자 기 관 [] 민 간 [] 기 타 []			
주소 및 성명(명칭)						
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사업주)

(서명 또는 인)

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

첨부서류	1. 도급계약서(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)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. 도급금액 산출명세서(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)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안내사항

-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“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”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·운영해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자카드 단말기 및 현장 상세주소 등의 정보등록이 필요하므로,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확인·검토	→	결재	→	전산입력	→	통보
신고인		건설근로자 공제회		건설근로자 공제회		건설근로자 공제회		건설근로자 공제회		건설근로자 공제회